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83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엘 담당변호사 차재승, 정선경, 최원기, 홍재하, 이한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택수, 강태욱, 이재성, 신혜원, 김대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나1488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의류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D'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하 피고와 같이 가리킬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다(이하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직영 매장', 대리점이 운영하는 매장을 '대리점 매장'이라 하고, 직영 매장과 대리점 매장을 통틀어 '피고 매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년경 및 2014. 11. 7.경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E가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13. 5. 이전 피고와, E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피고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는 2013. 5. 무렵부터 2016. 6. 무렵까지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에 음원 파일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E에 피고 매장의 매장음악 이용내역에 따라 이용료를 정산해 주었다.

마. 피고 등은 E로부터 제공받은 음원파일 중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음원파일(이하 '이 사건 음원파일'이라 한다)을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였다.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연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하여(피고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 이유와 같이 피고 매장에서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의 계약기간 중 영업을 위하여 E가 제공한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 사건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연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공연에 관한 묵시적 허락 여부에 관하여(피고의 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 이유와 같이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의 이 사건 음원파일의 공연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허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대리점 매장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에 관하여(피고의 제2 상고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대리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관하여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는 대리점이 대리점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E와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나) 피고는 대리점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유치 증가를 통한 매출 증대 등의 부수적인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는 대리점의 공연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한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한 자는 저작물의 공연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대리점 매장은 피고가 아닌 대리점이 운영주체이므로, 대리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도 대리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대리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라거나 공연 그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가 대리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공연 자체의 이익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3) 원심은 공연의 주체가 아닌 피고가 대리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대리점 유치 증가를 통한 매출 증대 등의 부수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리점의 유치와 피고의 매출은 피고가 사용하는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 상품의 품질, 거래조건, 점포의 위치, 대리점 모집·관리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이다. 따라서 대리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피고의 대리점 수나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4)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대리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피고에게 그 밖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명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가 대리점 매장에서의 공연을 용이하게 한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리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대리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살펴, 피고가 대리점으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명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와 더불어 대리점 매장에서의 공연 이후 피고의 대리점의 수나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였는지와 그것이 대리점에서의 공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에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이숙연